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2-151호로 입법예고된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1. 학교교육 목적을 위한 저작권 제한

가. 교과용 도서의 범위 축소

(현행)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안)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과용도서에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으며, 그 목적의 범위 안에서 교과용도서를 이용할 수 있다.

■ 반대

- 개정 취지는 저작권법 제25조 제1항의 “교과용 도서”에서 “인정 도서”를 제외하려는 것으로 보임. 2012년 7월 12일 열린 공청회 자료집의 ‘주요 개정사항’에서도 “인정도서의 급증으로 저작권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손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의 교과용 도서 중 면책 대상이 되는 도서를 저작권법에서 별도 규정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한 바 있음.
- 그러나 저작권법 제25조 제4항에 따르면 인정도서인 경우에도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인정도서의 급증으로 인해 저작권자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한다는 개정 이유는 타당하지 않음.
- 그리고 인정도서도 학교에서 교육 목적으로 이용하는 도서라는 점에서는 국정도서·검정도서와 차이가 없으므로 저작권법 제25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인정도서를 제외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 만약 개정 사유에서 밝힌 것처럼 교과용 도서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면 법률에 교과서(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말하며, 검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를 포함한다)와 지도서(학교에

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사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를 명시하면 충분하고 교과용 도서의 범위를 굳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음.

나. 교과용 도서의 ‘게재’ 를 ‘이용’ 으로 확대하는 안

■ 찬성

- 다만 “그 목적의 범위 안에서 교과용 도서를 이용할 수 있다” 에서 “그 목적” 이 무엇을 말하는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학교 교육 목적” 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교육 기관의 범위 축소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현행)

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등의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1.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에 위하여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한다)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2. 제1호 각 목에 따른 교육기관의 수업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

■ 반대

- 개정 사유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를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 으로 수정하여 그 대상을 명확히 한다고 되어 있으나, 개정 조문은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 을 “상급학교 입학에 위하여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 으로 한정하고 있음.
-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은 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한 저작권재산권 제한 규정이므로, 교육기관을 학력 인정이나 학위 수여 기관으로 제한하려는 개정 취지에는 동의하기 어려움.
- 교육 목적이라는 점이 다른 법률에서 인정된 기관에 대해 학력 인정이나 학위 수여라는 잣대로 차별하여 저작권재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없음.

라. 복제방지 조치 의무화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의 이용)

(현행)

⑩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안)

⑩ 제1항에 따라 교과용도서를 전송의 방식으로 이용하는 경우와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등이 전송의 방식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반대

- 교육기관이 교과용 도서를 전송의 방식으로 이용하는 경우란 교육기관이 교과용 도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피교육자에게 전송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때 교육기관에게 권리의 침해 방지를 위한 복제방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저작권법 제25조 제10항).
-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피교육자를 잠재적인 저작권 침해자로 취급하는 것이나 다름 없음. 저작권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은 교육 기관이 저작권자에게 대가를 지불한 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용 대상자인 피교육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입법 태도는 잘못임.
- 또한 보상금 지급을 전제로 이용권이 인정되는 다른 이용자(저작권법 제75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제76조에 따른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 제8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제83조에 따른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에게는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더라도, 교육기관에게만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음.

- 교육기관이 교과용 도서를 전송의 방식으로 이용할 때마다 권리 침해 방지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드는데,¹⁾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한 교육기관에게 이러한 거래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합법적인 이용 행위를 제약할 수 있음.
-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보더라도, 교육기관에게 보상금 이외의 추가 비용을 과다하고 형평성에 어긋나게 요구하는 규정은 삭제해야 함.
- 권리 침해의 예방이 목적이라면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경고 문구 정도로 충분하며, 설령 교육기관의 전송 행위로 인해 제3자에 의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저작권자는 이 제3자를 상대로 얼마든지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음.

2. 비영리 공연

- 의견 없음.

3.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 찬성

4.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등록 업무

- 의견 없음.

5. 인증제도

- 의견 없음.

6. 신문·간행물의 저작재산권자 표시의무 면책

- 의견 없음.

1) 전국 1만 여 개의 초·중등학교 홈 페이지에 DRM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초기 비용만 약 720억 원이 들고 매년 약 86억 원의 유지관리 비용이 든다고 함(공청회 자료집 69면).

7. 정보 검색 서비스제공자의 면책 요건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와 관련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그 호의 분류에 따라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정보검색도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상 저작물등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하는 행위

(현행)

가. 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개정안)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 반대

- 개정안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중 정보 검색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범위를 축소하여, (i) 저작물의 송신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ii) 저작물이나 수신자를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iii) 반복 침해자의 계정을 해지하는 방침을 채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행한 경우를 면책 요건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 정부는 이 개정안이 정보 검색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요건을 다른 유형의 OSP와 동일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한미 FTA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당시 한미 FTA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잘못을 뒤늦게 치유하려는 것에 불과함.
- 한미 FTA가 조약으로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한미 FTA와 저촉·충돌하는 국내법을 정비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조약 상대방인 미국이 이행하지 않는 의무를 우리만 이행하려는 태도는 재고해야 함.
- 즉, “저작물의 송신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를 요건으로 정보 검색 서비스 제공자를 면책하겠다는 저작권법 제102조는 한미 FTA 제18.10조 제30항 나호 2목의 “전송 체인을 개시하지 않을 것” 과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저작권법 제512조에는 없는 요건임.
- 따라서 저작권법 제102조에서도 “저작물의 송신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를 단순 도관 서비스 제공자 이외의 서비스 제공자에게 면책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아야 함.
- 또한 반복 침해자의 계정 해지 정책과 관련하여서도, 정보 검색 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는 단순히 정보를 검색하는 자에 불과하고 정보를 검색하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 검색 서비스 제공자에게 반복 침해자의 계정 해지 정책을 요구할 논리적인 근거도 없음.

- “저작물이나 수신자를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도 미국 저작권법 제512조에서는 정보 검색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요구되지 아니하는 요건임.
- 또한 한미 FTA 제18.10조 제30항 나목 2는 “하이퍼링크 및 디렉토리를 포함한 정보검색도구를 이용함으로써 이용자를 온라인상의 장소에 소개하거나 연결” 하는 기능이 “그 자체로서 어떤 형태의 선택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 현행 저작권법 제102조의 면책 규정과 한미 FTA 제18.10조 제30항은 저촉·충돌하는 내용이 매우 많음.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미국과의 상호주의, 그리고 한-EU FTA에서는 요구하지 않는 면책 요건 추가로 인한 조약 위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작권법 제102조의 전반적 개정 논의가 필요함.

8.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기술적인 조치 이행여부 점검 및 위탁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①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안 - 3, 4항 신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종사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반대

- 개정안은 저작권법 제104조의 기술적 조치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업무를 민간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는 개정 사유에 대해 기술적 조치의 이행 여부 점검을 위해 전문인력을 보유한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필요가 있고, 웹하드 등록제의 시행에 따라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기술적 보호조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함.
- 그러나 저작권법 제104조의 기술적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업무는 민간위탁의 대

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개정안과 같은 입법은 불가능함.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를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있는 사무 즉, 공권력이 수반되는 사무는 민간위탁 대상에서 제외됨.

- 그런데 저작권법 제104조의 기술적 조치 이행 여부는 저작권법 제142조 제1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과태료 처분의 근거가 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폐지명령의 근거가 됨. 따라서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 서비스 사업자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가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 처분과 같은 공권력이 수반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규정한 개정안은 허용될 수 없음.
- 행정권한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도 공익과 관련되어 독자적인 재량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규제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사무가 아닌 단순한 사실행위와 민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기술적 사무를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는 책임성과 공정성을 띠므로, 대통령과 국회에 의하여 직접 통제될 수 있는 행정기관과 그 공무원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민간위탁의 입법의 한계를 정한 것임(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제2편, 제3장의 6 참조).
- 또한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기술적인 조치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사무는 개정 사유에서 밝힌 것과 달리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지도 않음. 현재 이러한 모니터링 사무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지 않고 (사)저작권단체연합의 저작권보호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저작권보호센터는 기술적인 조치가 요청된 저작물이 해당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한지를 알아보는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뿐임. 따라서 전문성을 이유로 민간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는 개정 사유는 타당하지 않음.
- 저작권보호센터와 같은 민간단체에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하고 이를 근거로 문화체육관광부가 기계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근거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을 할 경우, 결국 공권력의 행사를 민간이 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낳게 됨. 또한 저작권자 단체는 기술적인 조치와 관련하여 가장 첨예한 이해관계를 가진 이해당사자들인데, 이들에게 행정사무를 위탁하면 개정사유에서 밝힌 것과는 정반대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음.

9. 신탁단체 임원 자격 요건 강화

- 의견 없음.

10. 신탁범위 선택제

■ 찬성.

11. 직권조정 제도

<p>제117조(조정외 성립)</p> <p>(현행)</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개정안)</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부는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 정부는 3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조정부장은 제112조의2제2항제2호의 판사의 직에 있는 자이어야 한다</p> <p>1. 조 정부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였으나 일방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이를 거부한 경우</p> <p>2. 조정 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p> <p>③ 직권조정결정서에는 주문(主文)과 결정 이유를 적고 이에 관여한 조정위원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p> <p>④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불복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조정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p> <p>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조정 결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한 경우</p> <p>2.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p>

■ 조건부 찬성

- 형식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저작권자들이 합의금을 중용하고, 형사고소·고발이 남발되는 사정을 감안하면, 조정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직권조정 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에는 찬성함.
- 그러나 조정부를 구성하는 저작권위원회를 법적 요건에 맞게 다시 구성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저작권법 제112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저작권위원회의 위원은 저작권법

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보유자와 그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함. 그런데 현재 저작권위원회는 이러한 법적 요건에 맞게 구성되어 있지 않음.

- 저작권법 제112조의2 제2항에서 저작권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해 균형 요건을 둔 것은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면서 권한이 강화된 저작권위원회에 대해 국회가 통제하겠다는 입법적 결단이었음. 당시 국회 심사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음.
-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저작권위원회의 권한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원회 구성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 ○ 저작권위원회의 권한강화에 따라 저작권위원회 구성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필요함.”
- 또한 당시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저작권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하였다고 함.
- ○ “첫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원회 구성 시 권리자 단체 및 이용자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

12.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른 권한위임 대상 조정

- 의견 없음.

13. 저작권경찰 수사 지원 근거 마련

(신설)

제130조의2(수사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6호에 따른 저작권 침해 단속 사무와 관련하여 기술적 자문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회 또는 저작권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반대

- 개정안은 소위 “저작권 경찰”의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저작권위원회 또는 저작권 관련 단체에 기술적 자문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저작권 경찰은 2008년에 도입되었는데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주된 이유는 저작권 소관 부처의 전문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임. 그런데 이제 와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저작권 관련 단체에 기술적 자문을 받아야 한다면 문화부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미이므로, 저작권 경찰 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진 셈임.

- 더구나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하여 저작권 관련 단체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일 뿐이고 단속과 관련된 전문성을 보유한 단체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기술 자문을 받아야 수사의 전문성이 강화된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음.
- 개정안에서 말하는 단속 사무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은, 저작권 침해 단속 사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범죄의 수사에 대한 것임. 그런데 저작권법 위반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회사나 단체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수사에는 필연적으로 압수나 수색을 수반하게 됨. 이처럼 인권침해의 소지가 가장 큰 수사 과정에 이해당사자인 저작권자 단체의 참여를 공식적으로 허용하면, 수사 업무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고, 저작권자들에게 공권력을 자력 구제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민주국가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또한 저작권보호센터의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불법 저작물 유통량은 2006년에 비해 2011년은 7%에 불과하며, 불법 저작물 시장규모도 약 1/10로 감소하였음(아래 표 참조). 따라서 개정 사유에서 “단속 대상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불법 저작물 유통량(개)	불법 저작물 시장규모(원)
2011년	21억 (18억)	4천 2백억
2010년	18억 9천 (16억)	5천 1백억
2009년	23억 9천	8천 8백억
2008년	34억 5천	9천 7백억
2007년	-	-
2006년	299억 8천	4조 4천억

- 종합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도 인정되기 어렵고 저작권 침해 단속 대상이 대폭 감소한 현실을 감안하여 저작권 경찰 제도를 폐지하여야 함.

2012년 8월 6일

<단체>

- 문화연대 (공동대표 강내희, 임정희)

주소 : 서울 마포구 공덕동 120-10 3층

전화 : 02-773-7707

-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임순혜)

주소 : 경기도의왕시내손동 791 의왕내손주공아파트 108동1402호

전화 : ***-***-***

-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전규찬)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9-19 3층

전화 : 02-732-7077

- 인터넷 주인찾기

주소 : <http://ournet.kr/>

전화 :

-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오병일)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227-1 우리타워 3층

전화 : 02-717-9551

-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이종희)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227-1 우리타워 3층

전화 : 02-774-4551

- 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지현, 박현권)

주소 : 서울 마포구 성산1동 249-10번지 시민공간 나무 5층

전화 : 02-921-4709

<개인>

- 남희섭 (변리사)

주소 : *****

전화 : *****

- 박성호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

주소 : *****

전화 : *****

- 소재성

주소 : *****

전화 : *****

- 이은우 (변호사)

주소 : *****

전화 : *****

- 장우민

주소: *****

전화: *****

- 장익수 (아시아정보교육센터)

주소 : *****

전화 : *****

- 장혜영

주소 : *****

전화 : *****